

# 학술연구기금관리규정

제 정	1999. 3.
개 정	2006. 3.

**제1조 (목적)** 이 규정은 우송대학교(이하 “본대학”이라 한다) 연구 진흥을 위한 학술연구기금 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의 기본 지침을 정하여 기금의 합리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.

**제2조 (관리부서)** 기금의 관리는 산학협력단에서 관장한다.

**제3조 (기금의 조성)** 기금이라 함은 재단 출연금, 외부기관 기부금, 연구 간접경비, 기타수입금 등으로 연구 및 학술활동을 위하여 본 대학에 무상으로 후원된 재산을 말한다.

**제4조 (회계처리)** ①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본대학의 세입과 세출 예산에 관한 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.

② 기금은 금융기관의 별도 계좌에 예치하여 행정지원처 경리팀에서 관리하고 별도 계좌 설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다.

③ 기금의 집행은 산학협력단의 집행계획에 따른다.

④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 수입 및 기타 수입은 제 4 조 ②항의 계좌에 적립한다.

**제5조 (영수증의 발급과 사의(謝意)의 표시)** 기금의 기부 시에는 총장 명의의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,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의(謝意)를 표할 수 있다.

**제6조 (사용)** 기금은 일정 기간 적립하며, 기금 적립에 의하여 발생한 이자 수입 및 기타수입금은 연구지원 및 학술연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에 사용할 수 있다.

1. 교내 연구비
2. 연구시설 유지 및 보수비
3. 연구 활동 지원 인력의 인건비
4. 학술 및 연구 활동 지원비
5. 기타 학술 연구 및 연구 활동의 지원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

**제7조 (기타)**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**제1조** 이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**제1조**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